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408
----------	------

제출연월일 : 2020. 7. 3.

제 출 자 : 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44조 및 제45조”를 “제44조, 제45조 및 제77조”로 한다.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제4항(중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을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을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으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3제2호 중 “제48조의2제2항”을 “제4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8조의2제3항”을 “제48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51조제4항 본문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동차제작자가”를 “자동차제작자가 검사 판정 전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 ⑧ 자동차제작자가 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함시정결과를 검토한 후,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고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자동차제작자가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69조의2제4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검사대행기관”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의3제2호 중 “제74조의2제2항”을 “제74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74조의2제3항”을 “제74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각각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8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취소, 폐쇄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0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1조제3호 중 “제43조제4항”을 “제4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 중 “제48조의2제2항제1호”를 “제48조의2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제74조의2제2항제1호”를 “제74조의2제3항제1호”로 한다. 제92조제6호 중 “제43조제3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제1호의4 및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3.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합시정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합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제94조제3항제9호 중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1조제7항·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8호, 제94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규제 등의 관할 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경우의 규제, 행정처분 등의 관할 관청에 대해서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 배출가스 결합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8호,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1조제4항 및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 제51조제6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합시정명령을 하거나 스스로 결합을 시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② (생략)</p> <p>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 <u>제44조</u> 및 <u>제45조</u>에서 같다)</p> <p>·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p>	<p>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제44조, 제45조 및 제77조</u>-- ----- ----- ----- ----- ----- ----- ----- ----- ----- ----- ----- ----- ----- ----- ----- ----- ----- -----</p>

④ ~ ⑥ (생략)

제43조(비산면지의 규제)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면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3조(비산면지의 규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  
-----  
-----  
-----  
-----  
-----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③ (생략)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⑤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  
-----  
-----.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대행기관 -----  
-----  
-----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



⑤·⑥ (생략)

<신설>

<신설>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① ~ ③ (생략)

④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⑧ 자동차제작자가 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 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 설>

<신 설>

제69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보고받은 결합시정결과를 검토한 후, 결합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유가 결합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합을 시정하려고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합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합시정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합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자동차제작자가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결합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결합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69조의2(결격 사유) -----  
-----  
-----  
-----.

1. ~ 3. (생략)

4. 제6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생략)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①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③ (생략)

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1. ~ 3. (현행과 같음)

4. ----- 취소 (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5. (현행과 같음)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대행기관 -----  
-----  
-----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  
-----  
-----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74조의2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3.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생략)

-----  
-----.  
-----  
-----.

- 1. (현행과 같음)
- 2. 제74조의2제3항 -----  
-----
- 3. 제74조의2제4항-----  
-----  
--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  
-----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7. (생략)

<신 설>

9. 삭제

- 10. · 11. (생략)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②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취소, 폐쇄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0조(벌칙) -----  
-----  
-----  
-----.

- 1. ~ 7. (현행과 같음)
- 8.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 · 11. (현행과 같음)

제91조(벌칙)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의5. (생략)

3.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 4. (생략)

4의2. 제4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 ~ 11. (생략)

12. 제74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2의2. ~ 13. (생략)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 14. (생략)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  
-----  
-----.

1. ~ 2의5. (현행과 같음)

3. 제43조제5항-----  
-----

3의2.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48조의2제3항제1호 --  
-----  
-----

5. ~ 11. (현행과 같음)

12. 제74조의2제3항제1호 ----  
-----  
--

12의2. ~ 13. (현행과 같음)

제92조(벌칙)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43조제4항-----  
-----  
-----  
-----

7. ~ 14.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삭 제

1의2. (생 략)

<신 설>

1의3. · 1의4. (생 략)

2. (생 략)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 략)

9.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  
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 16. (생 략)

④ ~ ⑥ (생 략)

-----  
-----  
-----.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  
립·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의4. · 1의5. (현행 제1호의3 및  
제1호의4와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  
항-----  
-----  
-----

10. ~ 16.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